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연종석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2일

3. 제안이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빛공해 방지조례의 목적, 조명기구 정의 및 범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빛공해 관리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필요지역과 선정 절차, 조명기구 설치 지도 권고와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 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마. 빛공해 방지 시책 추진 관련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 바. 빛공해 방지 우수자, 조명기구 선정 시상 (안 제12조)

## 5. 검토내용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수면방해, 눈부심,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도심뿐만이 아닌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빛공해로부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조명기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빛공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7조는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지역과 철새도래지 등에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적용절차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 및 제9조는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에 관한 사항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 또는 우수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18. 11. 15.~'18. 11.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